

차례

제1장 총칙.....	1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1
제3장 학생생활.....	3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0
제5장 학생생활교육.....	12
제6장 학교폭력.....	16
제7장 학생회.....	18
제8장 규정의 개정.....	20
별지1호.그린마일리지 상·별점 발급 기준.....	23
별지2호.징계기준 및 별점.....	26
별지3호.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	27
별지4호.그린마일리지 상점 추천서 양식.....	29
별지5호.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30
별지6호.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31
별지7호.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32
별지8호.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	33
별지9호.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34
별지10호.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확인서.....	35

별지11호.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36
별지12호.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37
별지13호.물품 폐기 확인서.....	38
별지14호.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39
별지15호.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발췌.....	40

2024 전북유니텍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6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고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7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생활

제8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1.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4.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5.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6.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8.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10.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4. 학생은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6. 학생은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1.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

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5. 수업 중 급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교과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다녀온다.
6.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7.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8.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9.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10.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11.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2.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13.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13조(휴식시간)

1.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2.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3.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5. 학생은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6. 식생활관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7.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8.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9.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10.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11.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을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 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드라이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9)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5조(소지 물품 조사)

1. 제14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2.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3.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4.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5.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 14조 제1호(성냥,ライター, 폭죽, 드라이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 14조 제2호(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 14조 제7호(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16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2.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3.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아래 붙임 파일과 같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1. 학생은 교육활동(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교육활동 방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지도교사는 1주일 이내로 해당학생의 통신기기 등을 보관할 수 있다.
3.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4.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5.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8조(정보통신 윤리)

1.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거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6.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

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 9) 학교나 본교 학생의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한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로 학교의 명예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행위는 징계기준 및 벌점을 적용한다.
- 10) 불법촬영(몰래카메라, 상대 미 동의하 촬영, 이성을 상대로 하는 불법 촬영 등)을 하지 않고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한다.
- 11) 부당한 영상물(사진 및 동영상), 음성은 유포(게시 및 전송)하지 않는다.

제19조(용모)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 복장은 학교에서 정한 지정복으로 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혹서기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흡연, 복장위반: 교사와 학생자치부의 계속된 지도에 불응할 경우 학생자치법정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복장의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4. 체육활동 및 실기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5.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단, 크룩스, 물 종류의 신발은 금지한다.)
6.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단, 클러치 종류의 가방은 금지한다. 허용하는 가방의 종류는 A4사이즈 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으로 제한한다.)
7. 학생의 두발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해 단정히 하되, 염색은 지나치게 밝거나 튀는 색상(빨강, 노랑, 보라, 초록 등)은 금지한다.
8.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9. 입학 전부터 있던 타투는 최대한 가리며, 다른 학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10. 복장은 장소와 행사에 맞춰 입는다.
11. 학교의 교실에서 교복을, 실습장에서는 실습복을 입고, 운동 중에는 체육복을 용도에 맞게 입는다.
12. 실습 중에는 반드시 실습복과 양말, 실습화를 착용한다.
13. 실습 후 실습장 내에서 휴식을 취할 때에는 실습복 탈의를 허용한다.
14. 실습이 있는 날이어도 무조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등교 시 교복이 작거나 없는 학생의 하의는 검정색·네이비색 슬랙스 바지까지는 허용하

- 되, 지나친 와이드 종류와 조거팬츠 종류 또는 그와 유사한 종류의 바지는 금지한다.
16. 사복데이를 실시할 때 복장은 최대한 단정한 선에서 입는다. 반바지의 경우 길이가 허벅지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옆·뒤·앞이 트이지 않는 옷, 목부분의 쇠골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한다, 또한 민소매와 같은 옷은 금지한다.
 17. 교복은 처음 수령한 후 길이를 포함하여 꾸밈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수선을 금지한다.
 18. 피어싱은 양쪽 귀 합쳐서 최대 5개까지로 규정하며, 귀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 피어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단, 링 종류를 포함하여 다칠 위험이 있는 피어싱 종류는 금지한다.)
 19.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새로운 기준 확립 필요 등과 같은 사안 발생 시 정식으로 생활규정이 되기 전까지 학생회 부서인 생활지도부와 각 학급의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 후 반영한 기준으로 학생회 회의를 통해 학생회 임원의 과반수의 인원의 찬성한 경우 임시로 해당 사항에 대한 복장 규정 기준을 마련 후 공지 및 생활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 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승차를 금한다.
8.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 복용을 금한다.
9.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1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2조(자치활동)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

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6.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23조(기타)

1. 부모님 혹은 선생님 차량을 타고 등교 시 학생은 교문 밖에서 내린 뒤 출입해야 한다.
2. 교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등교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벌점 등의 징계를 받는다.

제24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5조(생활지도의 방식)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과 같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별지 1>, <별지 2>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그린마일리지 상·벌점 규정) 교내·외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그린마일리지 벌점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지도하도록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벌점 발급기준

- 1) 생활지도 권한을 가진 교사는 벌점 부여시 가중처벌 불가
 - 2) 상·벌점 기준은 균일화하며, 중복된 벌점 불가
 - 3) 상·벌점은 당해연도에 적용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면 새로 입력됩니다.
 - 4) 징계 외 교내·외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동시에 상점 적용 가능
 - 5) 벌점에 의한 단계별 지도는 월말 기준 단계별 지도 기준표에 따라 실시
2. 연말 상점이 가장 높은 학생들 몇 명에 한하여 적정 수준의 장학금을 수여함.

3. 월말 기준 단계별 지도 기준표 (<별지 1> 참고)

별점	담당	비고	지도 사항
40점 이상	담임	학부모와 학생 면담	담임 지도
60점 이상	학생부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교감 혹은 학생부 지도
80점 이상	학생부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교내봉사 활동
100점 이상	학생부	학부모와 학생 면담	사회봉사 활동
120점 이상	학생부	학부모와 학생 면담	퇴학 결정

제 4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7조(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 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각 부장교사(4명), 생활교육 담당교사, 상담교사(상담업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교육위원회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인성인권안전부 업무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9조(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학교 생활교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

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학생 징계)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아래 <붙임 1>의 학교생활교육 기준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 4) 제26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37조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제적·기피 및 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32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6. 훈계, 훈육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교육공동체가 합의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할 만한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

제33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

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4)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1.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2. 제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원칙)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6. 제 19조의 사안들을 위반했을 경우 학생자치회의 생활 지도에 따른다.
 - 1) 3회 위반 시 담임교사에 통보
 - 2) 4회 이상 위반 시 학생자치법정(회장, 부회장, 각 부서 부장 구성)에서 봉사 수위 결정
 - 3) 2) 항목의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된 사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7. 무단 조퇴 3회를 무단 결석 1회, 무단 지각 3회를 무단 결석 1회로 간주하며, 추가적인 무단 결석이 있을 시 <별지 2>의 생활교육 기준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 (위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의 봉사 : 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실시한다.
2. 학교 내의 봉사 :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1일 최대 8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
3. 사회봉사 : ~3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1일 최대 8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
4. 특별교육이수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5. 출석정지 : 1회 20일 이내, 연간 5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6.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7.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교내에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

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1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4. 징계 대상 학생이 외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선행상 또는 봉사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학생교육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사후 조치)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2.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

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북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학교폭력

제45조: 학교폭력발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p>※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p>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금품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 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유형	학교폭력예방방법 관련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제7장 학생회

제46조 학생회

1.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4.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활동
 - 2)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 3)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4) 각종 행사활동
 - 5)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5.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6. 【학생회 임원, 임기】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2) 각 부장 1인씩 총 3인, 각 부 차장 1인씩 총 3인
 - 3) 각 학급 실장 및 부실장
 - 4) 회장·부회장 및 각 부장·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학기부터 1학기까지로 한다. (단, 2023학년도 3월부터 시작하는 회장·부회장 및 각 부장·차장의 임기는 1학기로 마무리하며 위 규정은 2023학년도 하반기부터 1년씩 하는 것으로 규정함)
7.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서와 부원을 둘 수 있다.
 - 1) 행사봉사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기,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학·예술 활동 행사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학교 내의 봉사활동 및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2) 생활지도부

- 학교 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생활지도부의 부장 및 차장 구성 시 다른 성별의 학우로 임명한다. (부장이 남학우일 경우 차장은 여학우로 임명, 부장이 여학우일 경우 차장은 남학우로 임명한다.)

3) 소통/홍보부

- 학교 홍보와 관련한 사항

- 학교 SNS 관리

8. 【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라.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마. 각 반 실장은 학급의 학급 회의를 주관하고 학급의 회무를 맡으며 학급회의를 통해 안전을 학생회에 상정할 수 있다.

바. 각 반 부실장은 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학교 내의 봉사 정도의 징계를 결정 할 수 있다.

아. 학생대표(임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나. 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교사3명, 학생15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입후보 자격이 있다.

- 교원 개입 금지 : 선거 운동 기간 중.

- 선거 운동 기간: 투표일 1주일 전 08:30부터 투표일 전날 16:30까지.

다. 각부 부장 및 차장, 부원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이 추천한다.

라. 각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은 각 학급 내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를 받은 인원을 선출한다.

9. 【회의】

1)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2)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인성인권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4) 가벼운 학생사안 발생 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가. 학생자치법정(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각 부장)에서 생활규정 및 전북유니텍고등학교 공동체 생활 협약을 위반한 학생에게 부과: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

나.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각 부장4인)1/2이상 제청 시 학생자치법정 운영

다. 운영시기: 사안 발생 시

라. 징계의 결정: 학생회 임원 1/2이상 찬성 시 징계 가결(협의록 작성)

마. 시행 및 감독: 학생회 회장 및 생활지도부장, 인성인권안전부장

5) 학생회 회의 진행일 기준 1주일 이전에 각 학급에서 학생회 회의 안건을 주제로 한 학급 회의를 통해 충분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한 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6) 학생회 회의에 비학생회 인원이 회의 참여 요청을 할 경우 학생회 임원 투표를 통해 학생회 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최대 3인의 비학생회 인원에게 학생회 회의 참여권 및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시보 기간 및 해임 조항】

1) 학교 생활규정 제 39조 6번, 7번 항목에 따라 선출된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부서원 및 각 학급 실장, 부실장은 1개월의 시보 기간을 가진다.

2) 학교 생활규정 제 39조 6번·7번 항목에 따라 선출된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부서원과 각 학급 실장 및 부실장에 관해 아래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시 심의위원회(인성인권안전부장, 인성인권안전부 교사, 회장, 부회장, 학생회 각 부서 부장 구성) 구성 후 심의를 통해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해임 또는 일정 기간(최대 14일)동안 해당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나. 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다. 학생회 회원 2/3 이상 및 인성인권안전부 교사 2인 이상이 요청(혹은 동의)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장 규정의 개정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은

- 4인, 학부모대표 1인, 학생대표 5인(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 대표가 위원회 구성원의 40%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학부모 대표는 1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1.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 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3.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5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학생자치회의 회의
 -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0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제1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학생이 징계를 불이행 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재회부하고 상위 단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특별교육의 경우 결석3회(지각, 조퇴, 결과 각 3회는 결석1회에 해당)초과 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재회부하고 상위 단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별지 1> 그린마일리지 상·별점 발급 기준

상 점			
구분	항목	내용	점수
태도	1	인사 예절이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됨	1
	2	친구 도움 및 선행 (확실한 근거를 통한 선행 학생)	2
	3	수업 태도가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됨	4
	4	교내·외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5
	5	학교 요청에 의한 면담에 학부모가 성실히 참여한 경우	2
	6	학생의 사회봉사·특별교육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경우	6
	* 위 1~4 항목은 최대 1달에 5회까지로 제한함. * 위 5번 항목은 연간 최대 3회, 6번 항목은 연간 최대 2회로 제한함.		
수상 명예	7	교내 표창 및 교내 대회 입상(교과우수상은 과목별로 발급)	2
	8	국가기술자격증 외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무검정 및 컴퓨터 자격증 포함)	4
	9	국가기술자격증 필기 합격(의무검정 제외 전공자격증, 동일 종목 1회 한정)	6
	10	국가기술자격증 실기 합격으로 자격증 취득(의무검정 및 과정형 평가 포함 전공자격증, 최대 3회 가능)	10
	11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학부모 제외)	6
	12	기타 외부기관 표창 혹은 시, 도 대회 입상	12
	13	언론 매체에 선행·모범이 보도됨	18
	14	장관급 표창 및 국제·전국대회 입상	24
청소 봉사 활동	15	청소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	2
	* 항목은 최대 1달에 5회까지로 제한함.		
신고	16	분실물습득 및 신고	4
	17	공익 제보(흡연, 음주, 도박, 괴롭힘 등)를 한 학생	4~10
	* 위 17번 항목은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만으로 제한을 둠.		
기타	17	본교 재학 중인 학생 중 10인 이상이 공통으로 추천한 학생(단, 객관적 근거 필요)	2
	18	매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자발적 선행을 하였을 경우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을 하는 경우.(단, 1달에 1인 1회 한정)	10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점 대상자가 확실하다 판단될 경우 교직원 회의를 통해 상점 부여가 가능함.		1~30

벌점

구분	항목	내용	점수	
출결	1	무단지각	13시 30분 이전 학교에 등교한 경우	2
			13시 30분 이후 학교에 등교한 경우	4
	2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결과 및 무단조퇴를 한 시간이 2시간 이내일 경우	2
			무단결과 및 무단조퇴를 한 시간이 2시간을 넘길 경우	4
	3	무단결석을 한 학생	6 ¹⁾	
<p>* 출결과 관련한 벌점은 어느 상점으로도 점수를 깎을 수 없으며 오직 상점 부분의 5·6번 항목으로만 깎을 수 있음</p> <p>* 위 1~2번의 경우 합산 점수가 하루에 최대 6점을 초과할 수 없다.</p>				
용의	4	기타 용의 규정 위반 (귀걸이, 피어싱 등)	학생자치 법정 이관 ²⁾	
	5	교복 착용 상태 불량		
	6	머리 또는 용의 규정 위반(파마, 염색 등)		
예절 및 태도	7	청소 활동에 지속해서 불성실하게 참여	1	
	8	실내 정숙 위반(공놀이, 괴성, 소란 음식물 반입 등)	1	
	9	급우 또는 선후배에게 심한 욕설 남용	2	
	10	교사의 훈육 및 지도 불응 (일반 지도 불응 3 / 징계 지도 불응 6)	3~6	
	11	교사 또는 어른에게 불손한 언행(반말, 욕설, 폭력, 희롱 등)	[별지 2]	
<p>* 7~9번의 항목의 경우 1달에 최대 5회까지만 벌점 수여 가능</p>				
수업	12	수업 준비상태 불량(수업 준비 태만, 과제 불이행 등)	2	
	13	수업 중 면학 분위기 저해(잡담, 장난, 음식물 섭취, 휴대전화기 사용, 전자기기 무단 사용 등)	5	
<p>* 위 12~13번의 항목의 경우 1달에 최대 5회까지만 벌점 수여 가능</p>				
준법	14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 치기 등)	10	
	15	타인의 꿈키움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시 (당사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도 포함)	4	
	16	음란물, 흥기 등 교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10	
	17	방과 후 학교 내 시설 사용(컴퓨터 사용, 타 교실 무단 침입)	5	
	18	교내에서 껌, 쓰레기를 함부로 뱉거나 버림	1	
	19	실외(등하교 포함) 실내화 착용 (실외화 미착용)	1	
	20	월담(교문이 아닌 곳으로 등교한 것 포함)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시	1	
	21	무단 외출(점심시간 및 휴식 시간 포함)을 하다 적발되었을 시	2	
	22	교내에서 비품, 공공기물의 고의적 훼손 또는 파손	10	
	23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거나 폭주 (등교 10 / 폭주 30)	10~30	
	24	출입 금지 장소 출입(술집,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 등)	20	
	25	공문서위조 및 학생증 변조	30	
	26	방화 행위 등 불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킬 시 (의도를 가진 자 포함)	30	
27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킬 시	30		
흡연 음주 폭력	28	교내·외에서 담배, 라이터 소지	2	
	29	교내·외에서 흡연 및 동조자	4	
	30	교내·외에서 술 소지	5	
	31	교내·외에서 음주 및 동조자	10	
<p>* 최대 벌점 수여 횟수가 정해진 내용을 제외한 내용은 적발될 때마다 벌점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p>				

※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는 <별지 1>의 그린마일리지의 상벌점 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별지 2>의 생활교육기준을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별지 1>과 <별지 2>로 논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직원회의를 통해 징계를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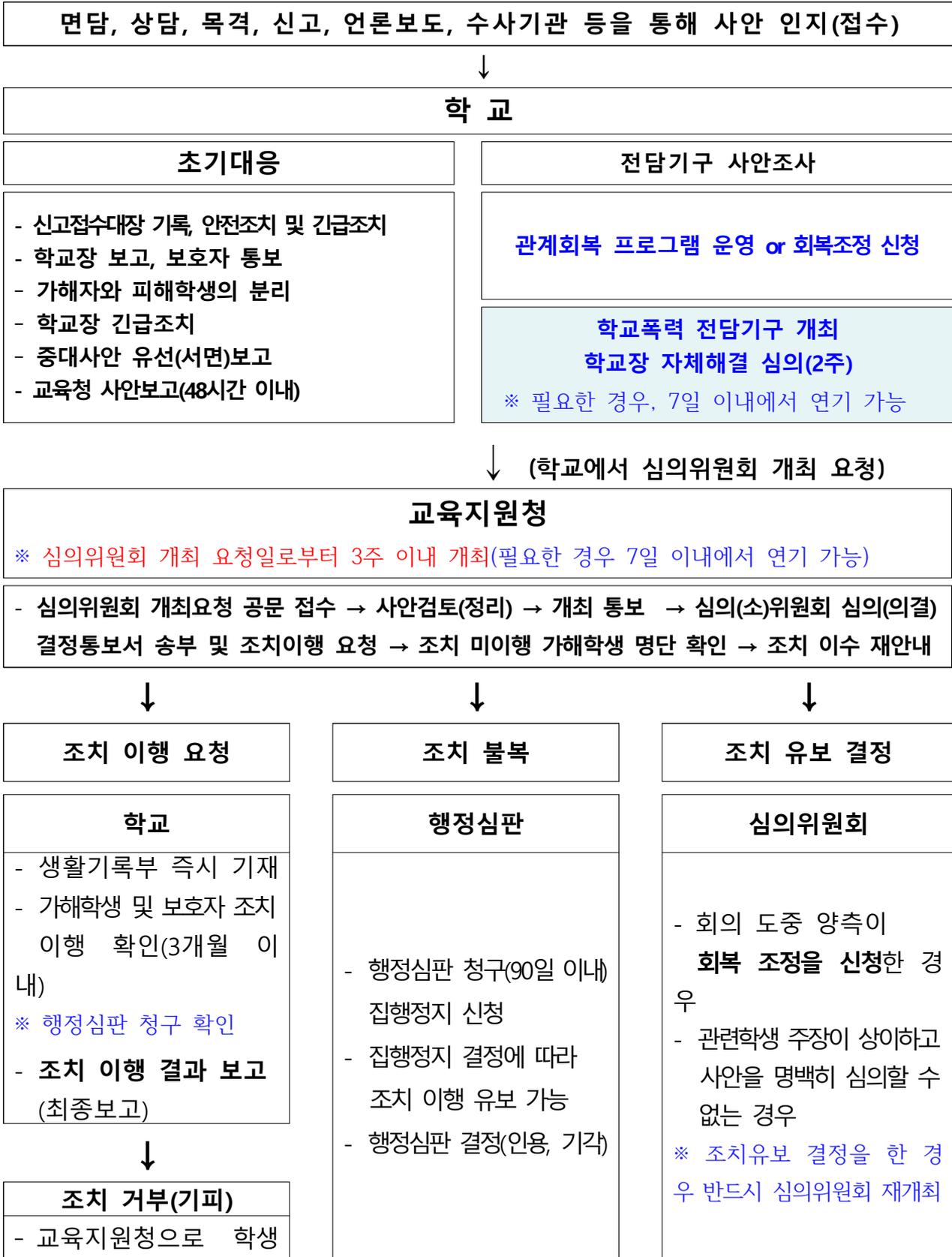
1) **벌점 120점이 되면 퇴학시키는 것으로 확정.**

2) 해당 항목은 학생자치법정에 이관하기로 함. 징계의 수위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5~10점의 벌점을 내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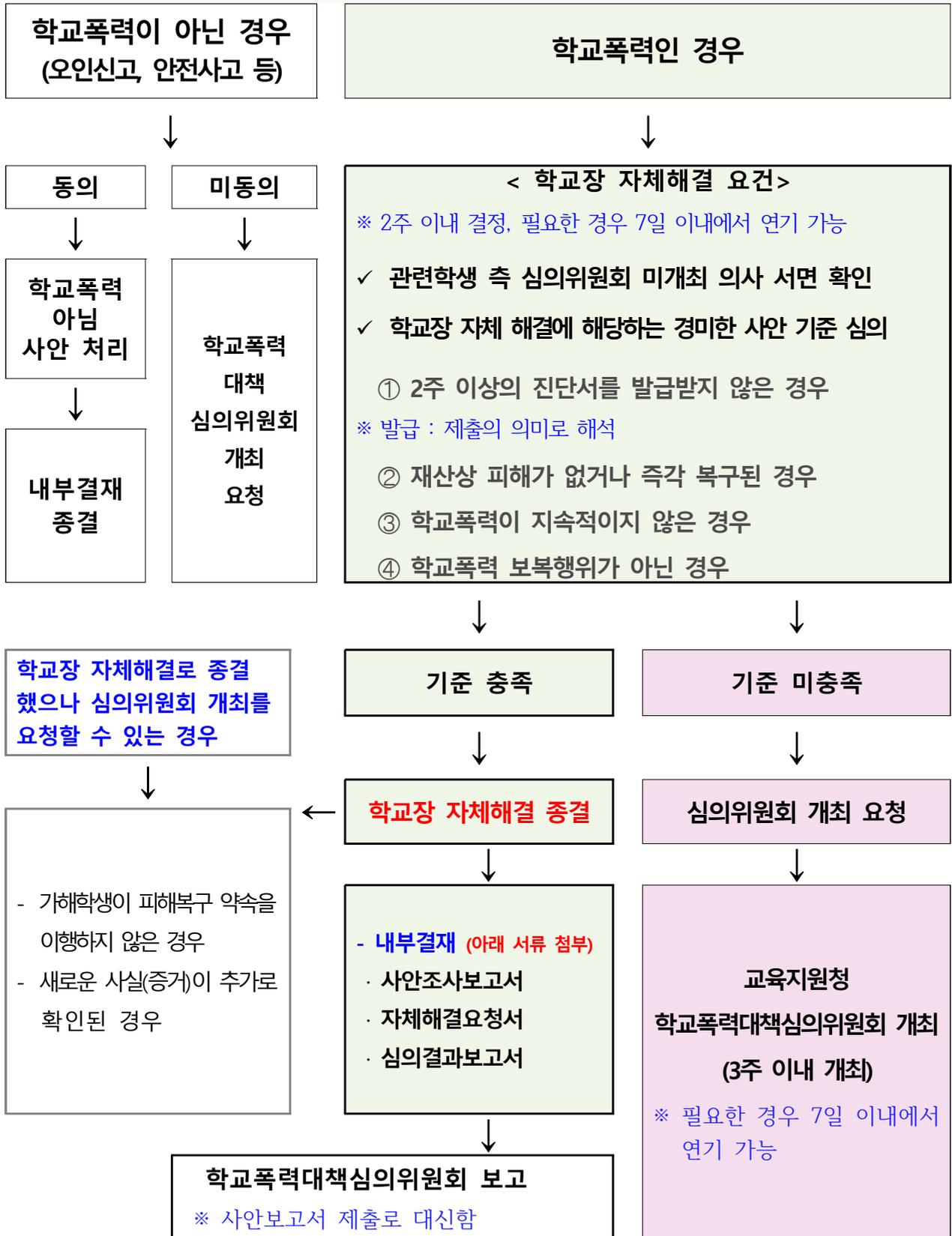
<별지 2> 생활교육 기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 회 사 봉 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 처 학분	
예절	1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3	경찰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		
	4	교내·외에서 절도를 하여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6	형법상 유죄(금고형 이상)로 판결된 학생				●	●	
수업	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8	백지동맹을 주동·선동하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9	시험문제지를 절취하거나 문제를 누설한 학생				●	●	
약물	1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퇴폐 행위	11	통신매체등을 포함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12	신체부위에 문신 및 타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 훼손 및 변형 행위	●	●	●			
금품	13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겹 등)을 판매 또는 강매한 학생		●	●	●	●	
	14	금품을 사취, 강탈한 학생				●	●	
교통 법규	15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금고형 이상)을 받은 학생				●	●	
집단	16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17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위반한 학생				●	●	
	1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19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기타	20	<별지 1>의 그린마일리지 상·별점 규정에 의거 누적된 별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	●			●	
	21	재학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3회이상 회부되는 학생				●	●	
		* 징계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 혹은 교직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특정 징계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시 징계지도 불응으로 간주하여 별점을 부여한다.						
* 학교폭력에 관한 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된다.								

<별지 3 > 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별지 4> 그린마일리지 상점 추천서 양식

그린마일리지 상점 추천서			
학 급		추천 교사 성명	
추천 학생명		생년월일	
【추천내용】			
【첨부: 객관적 근거】			
2000년 00월 00일			
추천인(교사)			(서명)

<별지 5>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 보관방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별지 6> 학생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분으로 함(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별지 7>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② 생활지도 방법

1. “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 “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별지 9>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일 자	2023. 11. 1. (금)		확인(서명)	특별실 담당자
	교시	수업담당교사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내 용	1	장00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00(5/1,7/5)
특이 사항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별지 10>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63-351-1518

2024년 00월 00일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OOO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2		학생과의 관계()

<별지 11>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상담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상담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옆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

<별지 12>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ライター, 화학약품 등	<input type="checkbox"/>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input type="checkbox"/>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input type="checkbox"/>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div>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13>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교원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14>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1/1쪽)
일자	년	월	일	요일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15>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1. 교육활동의 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의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의 책임·의무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3.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3. 4. 28.] [전라북도조례 제5256호, 2023. 4. 28., 타법개정]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

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의 권리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3. 4. 28.] [전라북도조례 제5256호, 2023. 4.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교사)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교사)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교사)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활동의 녹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 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 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5.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

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보호자의 책임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8. 재심청구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